

의안번호	제 497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종규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6년 10월 31일

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종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0 월 31 일
발 의 자 : 박종규, 이광희, 이양섭,
김영주, 박우양, 윤은희
임희무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변경 (안 제8조)
- “각급 학교” → “학교”
 - “보육시설” → “어린이집”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다. 입법예고 : 「충청북도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
- 라. 협의 :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협의
- 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**각급 학교**” 를 “**학교**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**보육시설**” 을 “**어린이집**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“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육“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집“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“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5. “보육교직원“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